

#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3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김경, 김기덕,  
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  
김형재, 민병주, 박수빈,  
박승진, 송도호, 오금란,  
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  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 
임종국, 최기찬, 최재란,  
한신, 홍국표 의원(23명)

### 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이에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은 물론 공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표창 근거 마련 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도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표창)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10조(표창)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협력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

##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재정수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 - 안 제10조는 표창관련 규정으로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(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)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표창장 제작비(1인당 5,500원) 정도의 소액만 소요되기에 해당 개정이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 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 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 
추계분석관 손재승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